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재진 의원 발의】



2021. 8.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80호로 2021년 8월 19일 김재진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정비(안 제2조)
- 나. 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 다.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 정비(안 제6조)
- 라.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에 토지소유자 추가(안 제10조)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1. 8. 13. ~ 8. 19./ 7일 간):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 6. 1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을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로 변경하고,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추가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사유를 추가 신설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의견청취 대상자에 토지소유자를 추가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 6. 11.)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추가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 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